

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6) 동물병원 운영난으로 재정이 악화된 경우의 해결 방안은?



한 두 환
 여강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
 today-we@hanmail.net

김명의 수의사는 2년전 '명의 동물병원'을 개원했다. 당시 목이 좋은 자리에 점포도 얻고, 최신 의료장비와 고급 인테리어를 갖추려니 김명의 수의사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렇게 큰 포부를 안고 동물병원을 개원했으나 고객이 많지 않았다. 은행 이자에 직원들 월급, 임대료, 병원 유지비 등 각종 운영비를 제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가 나기 일쑤였다. 김명의 수의사는 그래도 정성을 쏟은 동물병원이니 포기할 수 없었고, 조금 더 투자를 하면 고객이 많아질 거라 판단했다. 그래서 추가로 1억원을 대출받아서, 의료장비 구입과 인테리어 개선, 광고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

의 동물병원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은행으로부터 대출 원금을 상환하라는 독촉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명의 수의사는 명의 동물병원을 통해서 한달 평균 2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김명의 수의사가 갖고 있는 재산은 명의 동물병원의 임차보증금 1억원이 전부이다. 아파트 전세금 3억원은 처음부터 김명의 수의사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명의 동물병원의 의료장비들도 모두 리스를 한 것이라 아직 김명의 수의사의 소유가 아니다. 그렇다고 김명의 수의사는 평생의 꿈인 임상수의사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 김명의 수의사는 빛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모든 경제활동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른다. 개원에는 막대한 초기자본이 드는 반면 동물병원 사업이 경제사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가계 경제가 기울면 반려전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보호자가 많다. 그러다보니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동물병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국가는 김명의 수의사와 같이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였지만 불운하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빛이 있다고 아무 때나 파산·회생을 남용해서는 되레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파산·회생이 어떠한 제도이며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1. 개인파산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자신의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

다. 소위 말하는 빚잔치라는 것이 파산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개인파산은 대부분 면책을 같이 신청하게 된다. 면책이란, 파산 과정을 거치고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을 통해 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파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면책'이다. 법원의 면책 결정이 있어야 남은 빚도 탕감되고 파산의 불이익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파산이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넘기고, 채무를 한 번에 다 정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에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의 재산은 해당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파산을 신청하는 자 본인의 재산만을 말한다.

김명의 수의사는 명의 동물병원의 임차보증금 1억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약 4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면책을 받기 위한 조건

파산면책은 빚이 있는 사람에게 한 번에 빚을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제도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빚도 청산하지 못하고 파산자라는 사회적 낙인만 찍힐 수도 있다. 그러므로 파산면책을 신청할 때는 파산보다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는 면책 신청인에게 특별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청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판 경우, ② 신청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③ 낭비·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④ 신용으로 구입한 상품을 헐값에 처분한 경우, ⑤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아직 변제할 필요가 없는 변제를 한 경우, ⑥ 허위의 채권자목록·재산 목록 등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⑦ 파산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속이고 신용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⑧ 7년 내에 파산 면책을 받았던 사실이 있거나, 5년 내에 회생면책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사유는 재산을 가족 등의 명의로 숨기는 경우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신청인이 재산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가장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김명의 수의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금은 부인 명의이다. 만일 전세금이 김명의 수의사 명의였다면 파산을 신청하면서 그 전

세금도 채권자들에게 넘어가겠지만, 부인 명의의 재산이므로 그대로 보존된다. 그렇다고 이것을 두고 김명의 수의사가 재산을 숨긴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처음부터 부인 명의의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명의 수의사가 도박 등으로 부채를 지게된 것이라는 등 기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김명의 수의사는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다.

다. 파산면책의 효과는?

파산면책을 받으면 신청인의 재산이 모두 파산재단에 넘어간다. 파산재단이란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질 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파산재단으로도 다 갚지 못하고 남은 채무는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탕감된다.

그렇다면 파산면책의 불이익은 없을까?

파산 결정이 나면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수의사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불이익도 면책 결정을 받으면 다시 업무가 가능하다.

파산면책의 불이익은 이와 같이 법으로 정한 직업상의 불이익보다는, 금융거래상의 실제적인 불이익이 더 크다. 파산 결정이 있으면 은행권에 7년간 기록이 보존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금융거래가 크게 제약될 것이다.

김명의 수의사는 파산면책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김명의 수의사는 명의 동물병원의 임차보증금을 파산재단에 넘겨야 하므로 사실상 명의 동물병원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면책 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물병원을 개원하려고 해도 개원할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명의 수의사에게 파산면책은 오히려 김명의 수의사의 직업만 뺏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2. 개인회생

가.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수입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와 채권자의 채무관계를 법원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다. 보통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 동안 자신의 일정한 수입으로 채권을 일부만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란 급여를 받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수입을 산출할 수 있는 사업자도 해당한다.

개인회생이 개인파산과 다른 점은 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채무가 채권보다 많아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 한 번에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꾸준히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정리한다는 것, 신청인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명의 수의사는 매달 명의 동물병원의 수입이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인 수입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개인회생의 과정 및 효과는?

회생 신청인은 법원에 채무를 변제할 계획서를 제출한다. 5년 안에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그 기간동안 변제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5년간 전체 채무를 변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부의 채무만이라도 변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 계획서를 법원이 승인하면, 그에 따라 5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법원이 선정한 개인회생위원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그렇게 5년간 변제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게 된다. 즉, 회생 신청인이 자신의 전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더라도 5년간의 채무 변제로,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 주는 것이다. 다만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절차는 중간에 폐지된다.

실무상 회생 신청인이 매달 개인회생위원의 계좌에 입금할 금액은 신청인의 일정 수입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뺀 금액(일정 수입 - 최저생계비의 150%) 정도로 결정된다. 그렇게 매달 입금하여 변제하는 금액이 전체 채무에 비해서 너무 적을 때에는, 전체 채무의 약 30% 정도가 되도록 매달 입금할 금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김명의 수의사는 자신의 평균 월수입 200만원의 일부를 매달 개인회생위원의 계좌에 5년간 입금해야 한다. 그렇게 5년간 당초의 계획대로 변제를 충실히 했다면 전체 4억의 채무를 모두 갚지는 못하더라도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받게 된다. 또한 김명의 수의사는 자신의 재산인 명의 동물병원의 임차보증금을 파산재단에 넘기지 않아도 되므로, 명의 동물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도 있다.

다. 개인회생의 불이익은?

개인회생은 파산과 같이 업무가 제한되는 경우는 없지만, 역시 금융거래상에서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김명의 수의사의 입장에서는 명의 동물병원의 운영이 더 나빠질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3. 모럴 해저드 논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지만 불운하게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

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수입을 왜곡하여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많다. 또 파산·회생만을 믿고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만일 파산·회생 제도가 이러한 식으로 변질된다면 김명의 수의사와 같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파산·회생 제도에 따른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

(칼럼에 실을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를 겪으셨거나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자의 이메일로 상담글을 보내주세요. 상담글에 답변도 드리고, 익명의 칼럼 사례로서 실고자 합니다. 어떠한 주제라도 괜찮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